영상정보내부관리계획

1. 설치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가. 관리책임자 : 대표자(안00) 031-374-8488
나. 운영담당자 : 시설장(양00) 000-0000-0000

3. 카메라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가. 카메라 대수 : 총 22대
나. 카메라 위치 : 공사중

❃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각 공동거실(어르신침실과 연결되는 복도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 CCTV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다. 카메라 성능 : HD급(200만 화소)
라. 촬영범위 :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공간 및 장소

4.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규격 : 210mm x 297mm
나. 부착장소 : 시설외부 1층 주차장

5.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6. 영상정보 보관기간 : 60일

7.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8. 영상정보 열람장소 : 사무실

9. 영상정보 삭제주기 : 60일 경과시 자동 삭제

10.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나.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바.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가. 영상정보 열람요청 : 청구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열람·존재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청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다. 정보주체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라. 청구내용 : 청구영상기록기간, 청구영상설치장소,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마. 처리기한 10일 이내 :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12. 운영자의 금지행위

가.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나.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다.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13.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 : 서식별도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이용일자**: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파일명/형태/내용**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 시간**

○ **이용 장소**

○ **담당자 (성명과 서명)**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1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 서식별도

시설의 장은 월1회이상 내부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 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